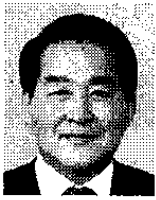


**【 2016.06.02(목) 강원일보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



장은 2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  
에서 열리는 LX  
한국국토정보공  
사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이달 착공

진부면 80억원 투입 - 문화올림픽 공간 활용

【평창】평창군이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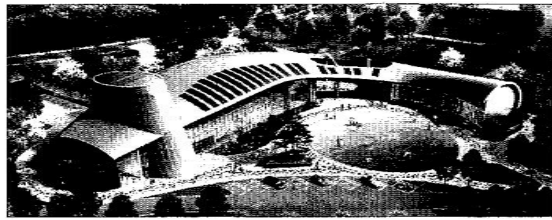
군은 진부면 평창송어축제장 일원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2,82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군은 1일 진부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지형근 평창부군수를 비롯해 박종욱·장

문학 군의원,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설계용역업체의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이달 중 착공해 2017년 11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공연체험장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축해 송어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 여가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해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진부면 송어축제장 일원에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조감도.

기간에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올림픽 이후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군에 각종 뮤지컬과 연극 등을

공연,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

완공되면 매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니다가 전국 축제로 발전한 평창송어축제의 브랜드 가치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및 올림픽 이후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올림픽을 테마로 지역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나타냈다.

김영석기자 kim71125@kwnews.co.kr

**【 2016.06.02(목) 강원도민일보 】**

## 서울~춘천고속철 용역비 65억 요청

최문순 지사, 기재부 방문  
도 현안 사업비 지원 건의

최문순 도지사가 1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 국비확보 활동을 벌였다.

최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도내 주요 현안사업 관련 부서를 돌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국토교통예산과를 찾아 강원도 최대 현안사업인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5억원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주~원주철도건설사업, 국도 5호선(홍천~춘천~화천) 건설을

위한 내년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최 지사는 농림해양예산과, 문화예산과, 예산총괄과를 잇따라 방문해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오색케이블카 설치, 평화누리길 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백오인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열리는 공사 출범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종합심사나찰제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이 '가혹하다'는 불만 목소리가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기술자 구인난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동일공종이나 동일공사나... 논란 속 '중심제 배치기술자 심사기준'

## 발주자 재량 '동일공사' 적용땐 중소사 입찰참여 제한 가능성

“기술자 부족한 2등급 이하 업체에 불리” 우려 목소리

1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종합심사 나찰제 심사기준에 따르면,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에서 현장대리인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는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실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동일공사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공종그룹이 토목이라면, 동일공사는 도로·철도·교량 등을 말한다. 문제는 계약예규에 근거해 발주기관이 재량에 따라 현장대리인 배치기술자 경력심사 기준을 동일공사 참여실적으로 발주할 경우다.

예를 들어 A발주기관이 중심제 대상 B도로공사를 발주할 때 현장대리인을 동일공사 실적인 도로공사 참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동일공종그룹인 토목공종 공사에 참여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건설사는 이를 현장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철도공사에 참여해 동일공종그룹인 토목공종 공사 참여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는 동일공종그룹 기준으로 발주하면 해당이 되지만, 동일공사 기준으로 발주하면 참여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도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중심제 심사제부기준에서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동일공사실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를 더 높이 평가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심사기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입찰참여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법에는 해당 건설공사와 비슷하고 시공기술상 특성이 비슷한 공사에 참여하면 기술자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세부공사 참여 기술자를 많이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기준이 상관 없겠지만, 기술자를 세부공사별로 보유하지 못하는 2등급 이하 중소건설사에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장에 배치돼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되어 있다.

건설법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 특성이 비슷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심제 배치기술자 심사기준 중 해당 입찰참가 업체에 6개월 미만 제1한 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는 조항도 중소건설업체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평가점수를 80%만 인정한다는 것은 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입찰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세부공사별로 기술자를 6개월 이상 상시 고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지금도 중심제 발주가 초기단계로 이런 형태의 발주가 드물지만, 중심제 발주공사가 늘어나 발주기관이 이런 규정을 이용해 발주할 경우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상준기자 newsplia@

### 아하! 그렇구나

#### 공사완료 전,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갑은 건축주 을과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을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을과 새롭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주장하는 병이 현장을 장악한 뒤 갑의 공사를 방해하자 갑은 병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반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한다. 갑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임의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 아래 계약을 해제하거나(합의해제), 약정 또는 법령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자기의 책임 아래 계약의 구속력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 구속력에서 함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계약과 달리 특유한 해제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민법 제673조). 계약은 어느 일방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계약

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계약 성립 후에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완하지 않는 경우에 굳이 계약을 강제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은 도급인에게 무의미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일의 완성 전까지만 인정된다.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이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사례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갑은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갑의 신청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